

손해배상공제규정

1998. 1. 1 제정 1998. 11. 11 개정
2003. 2. 10 개정 2004. 4. 13 개정
2008. 7. 31 개정 2012. 12. 14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 정관 제27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손해배상공제사업(이하 “배상공제”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배상공제의 업무처리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다.(2008. 7. 31 개정)

제3조(사업의 정의) 배상공제라 함은 회원이 소유·사용·관리하는 영조물의 관리하자 또는 업무상과실 등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인적, 물적 손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하여 공제회가 손해보험사와 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하여 보상하는 사업을 말한다(2012. 12. 14 개정).

제4조(업무의 분담) ①공제회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배상공제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회원을 대리하여 손해보험사와 배상책임보험을 일괄 단체계약으로 체결하고, 계약에 필요한 보험료를 공제회의 재원으로 우선 납부한다.

②회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보험료상당의 손해배상공제회비(이하 “공제회비”라 한다)를 공제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손해보험사는 회원에 대하여 손해조사, 보험금 결정 및 지급, 보험에 관련된 소송대행, 손해예방지도업무 등을 수행한다.

④보험에 관련된 일체의 권리·의무당사자는 회원과 손해보험사가 되며, 공제회는 제1항의 계약체결과 이에 따른 제2항의 공제회비 징수 및 권리·의무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문제해결을 위한 업무를 지원한다.

제5조(공제등록 대상) ①회원이 공제등록 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2008. 7. 31 개정)

1. 회원이 소유, 사용, 관리하는 시설 및 관리를 위해 보조하는 시설(2008. 7. 31 개정)

가. ~ 카.(2008. 7. 31 삭제)

2. 회원이 수행하는 각종 업무(2008. 7. 31, 2012. 12. 14 개정)

가. ~ 자.(2008. 7. 31 삭제)

② (2008. 7. 31 삭제)

1.~10. (2008. 7. 31 삭제)

제6조(공제등록 절차) ①회원은 공제등록대상을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공제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2012. 12. 14 개정).

②제1항의 공제등록신청서에는 보상한도액, 자기부담금 및 특별약관의 등록여부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 등록 당해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공제회에 일괄등록(이하 “정기등록”이라 한다)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간에 등록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등록(이하 “수시등록”이라 한다)신청할 수 있다.

③공제회는 보험업법에 의거하여 인가받은 보험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에 따라 회원이 공제등록 신청한 내용과 같은 조건으로 손해보험사와 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약관은 규칙으로 정한다(2012. 12. 14 개정)..

④공제회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결과를 정기등록의 경우는 예치보험료 납부일로부터 45일, 수시등록의 경우에는 등록일로부터 익월 15일 이내에 당해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2008. 7. 31 개정)

⑤공제회는 약관이 변경된 경우 손해보험사로부터 변경을 통보 받는 즉시 그 내용을 공제회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통보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공제기간) ①정기등록의 공제기간은 매년 1월 1일 0시부터 12월 31일 24시까지로 한다.(2008. 7. 31 개정)

②수시등록의 공제기간은 공제등록이 접수된 날 익일 0시 또는 회원이 지정한 날의 0시부터 당해연도 13월 31일 24시까지로 한다.(2008. 7. 31 개정)

③공제기간이 만료됨에도 변경, 해지에 대한 회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정기등록으로 자동갱신 한다.(2008. 7. 31 신설)

제8조(공제회비 등) ①회원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등록한 대상에 대한 공제회비를 공제회에 납부하여야 한다(2012. 12. 14 개정).

②제1항의 공제회비는 보험업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금융감독위원회가 인가한 요율로 산출된 금액에서 공제회와 손해보험사가 협의하여 할인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자치단체의 공제손해율에 따라서 추가로 할증 또는 할인할 수 있다.

③공제회비의 납부기한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2008. 7. 31 개정)

1. 정기등록분은 당해연도 3월 31일까지로 한다.
2. 수시등록분은 등록한 달의 익월말일까지로 한다. 단, 1월 등록분은 3월 31일, 12월 등록분은 12월 31일 이전으로 한다.
3. 수시등록분 중 단기가입의 경우에는 공제기간 종료일 이전으로 한다.

④(2008. 7. 31 삭제)

제9조(보험금 지급) 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 청구사유가 발생하여 회원이 이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손해보험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보험금 청구서
2. 공제회가 발급한 영조물배상공제 등록현황 및 업무배상공제 등록확인서 사본
3. 손해배상금 및 그 밖의 비용을 지급한 증명서류
4. 그 밖의 손해보험사가 요구하는 서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 신청서류를 접수한 손해보험사는 지체 없이 보험금 지급액을 결정하고 이를 10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금지급에 필요한 조사를 동 기간내에 마칠 수 없거나 회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손해보험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이상을 가급보험금으로 우선 지급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액이 결정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된 날로부터 지급 전일까지의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율에 상당하는 지연 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10조(보험금 보상한도액) ①손해보험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은 공제등록신청서에 기재된 보험금 보상한도액으로 한다.

②손해보험사는 영조물배상공제의 1회 사고 때에 보상하는 금액이 공제등록신청서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때에 한하여 그 초과분을 지급한다.

③손해보험사는 제1항에 의한 보상한도액 범위내에서 보험금외에 제12조제2호의 가목 내지 마목의 비용 전액을 지급한다.

제11조(회원의 사고통보) ①회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서면으로 공제회 또는 손해보험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 피해금액, 피해자의 인적사항, 사고상황, 증인(목격자)이 있을 경우 그 주소 및 성명
2.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때
3.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 받은 때

②회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고지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늘어난 추가비용은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2조(보험금지급의 범위) 배상공제의 보험금지급 범위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회원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2. 회원이 지출한 다음 각목의 비용
 - 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회원이 손해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다만, 배상책임 없음이 판명된 때에는 그 비용중에서 응급처치 및 병원후송 등 긴급조치를 위하여 지급한 비용과 공제회 또는 손해보험사의 사전 동의를 받은 비용에 한한다.
 - 나. 회원이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의 보전 또는 행사를 위하여 지급한 비용
 - 다. 회원이 공제회 또는 손해보험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 라. 공제등록신청서상 보험금 보상한도액내의 공탁보증보험료
 - 마. 회원이 손해배상청구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출석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사의 요구를 따르기 위한 비용
3. 특별약관에 의하여 공제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약관에서 정하는 보험금

제13조(통지의무) 회원은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변동 사항을 서면으로 공제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1. 공제등록 영조물의 증·감 및 소유권이 변동된 때
2. 공제등록 민원업무 직위 및 인원 수가 변동된 때
3. 그밖에 공제등록 조건 등 내용의 변동이 생긴 때

제14조(공제등록의 해지) ①공제등록 내용의 변동 및 그밖에 공제등록의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해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지는 등록회원으로부터 그 통지를 접수한 날에 해지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잔여기간의 공제회비는 일할 계산하여 환불한다.

제15조(적립금 조성) 손해배상공제사업의 적립금은 배상공제회비, 이식금, 그 밖의 수입 등으로 조성한다.

제16조(위임 및 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거나 관련 법규 등을 준용할 수 있다.(2008. 7. 31 신설)

부 칙(1998. 3. 11 규정 제108호 제정)

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에 관련되는 정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11. 11 규정 제 호 제정)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2. 10 규정 제135호 개정)

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등록된 물건은 이 규정에 의하여 공제 등록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4. 4. 13 규정 제145호 전문개정)

1. (시행일) 이 규정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7. 31 규정 제172호 개정)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12. 14 규정 제196호 개정)

1. (시행일) 이 규정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손해배상공제규칙

2002. 12. 9 제정 2004. 6. 29 개정
2004. 10. 15 개정 2004. 12. 27 개정
2005. 12. 30 개정 2006. 12. 22 개정
2007. 12. 27 개정 2008. 9. 19 개정
2009. 1. 1 개정 2009. 12. 30 개정
2010. 12. 28 개정 2012. 01. 01 개정
2012. 12. 31 개정 2013. 12. 31 개정
2014. 12. 30 개정 2015. 3. 20 개정

2015. 12. 29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의 손해배상공제규정에 의한 배상공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약관 및 요율서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약관의 적용) ① 손해배상공제규정 제6조제3항에 의한 약관은 [별첨1], [별첨2]와 [별첨3]에 의하여 적용한다.(2004. 6. 29, 2004. 10. 15, 2004. 12. 27, 2005. 12. 30, 2006. 12. 22, 2007. 12. 27, 2009. 1. 1, 2009. 12. 30, 2010. 12. 28, 2012. 01. 01, 2012. 12. 31, 2014. 12. 30, 2015. 3. 20 개정)

② 위 제1항의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규 등을 준용하며 그 외의 사항은 손해보험사와의 협의에 의하여 처리한다.(2008. 9. 19 개정)

제3조(공제등록 대상) 손해배상공제규정 제5조에 따른 구체적인 공제등록대상을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2008. 9. 19 신설)

1. 영조물배상공제 등록대상

가. 특별시, 광역시·도, 시·군·구, 읍·면·동, 지소, 출장소 등의 청사

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사용·관리하는 학교

다.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모·부자복지시설, 보호시설, 재활시설 등 그 밖의 복지시설

라. 각종 휴양시설

마. 읍·면·동 복지회관, 마을회관, 도서관, 박물관 등 문화시설

바. 체육관, 육상경기장, 야구장 등 체육시설

사. 농·임·수산가공시설, 육묘시설, 집·출하시설

아. 상·하수도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생활환경시설

자. 공원시설

차. 향만시설

카. 도로시설

타. 주차장시설

파. 청소년수련시설

하. 그 밖의 건축물 및 공작물 등 공제등록이 가능한 시설물

2. 업무배상공제 등록대상

가. 인감(변경)신고 및 인감증명 발급업무(외국인인감 포함)

나. 주민등록(전출·입, 말소, 증 및 등·초본발급)업무

다. 가족관계등록(출생·사망신고 및 등·초본발급)업무

라. 차량등록(이륜차 포함)업무

마. 여권 발급업무

바. 지적(임야)도, 토지(임야)대장, 건축물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원등 발급업무

사. 지방세 제증명 발급업무

아. 보건서 민원업무

자. 그 밖의 공제등록이 가능한 제증명 발급업무

3.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9조, 시행령, 규칙, 조례 등에 의거한 업무 또는 행위)(2012. 12. 31 신설)

제4조(공제회비의 적용) ①손해배상공제규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공제회비는 [별첨1], [별첨2] 또는 [별첨3]의 요율서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한다.(2004. 6. 29, 2004. 10. 15, 2004. 12. 27, 2005. 12. 30, 2006. 12. 22, 2007. 12. 27, 2009. 1. 1, 2009. 12. 30, 2010. 12. 28, 2012. 12. 31, 2014. 12. 30, 2015. 3. 20, 2015. 12. 28 개정)

②위 제1항의 요율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험요율에 대하여는 간사보험사와 협의한 협의요율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4조2(공제회비의 납부유예) 회원이 예산 미확보와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부과된 공제회비에 대하여 납부유예를 요청하는 경우 유예할 수 있다. 다만, 납부유예는 공제등록기간 중으로 한다 (2015. 12. 28. 신설)

제5조(공제등록 및 해지) ①공제회는 손해배상공제규정 제4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제 등록신청서를 접수받아 공제등록 및 관리업무를 수행한다.

②공제회는 손해배상공제규정 제14조에 의한 해지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제등록을 해지할 수 있다.

제6조(사고처리 및 보험금 지급) ①공제회는 손해배상공제규정 제11조에 의하여 회원으로부터 사고통보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손해보험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공제회 또는 회원으로부터 직접 사고통보를 접수한 손해보험사로 하여금 사고조사 및 보험금 지급업무를 처리하게 한다. 다만, 공제회는 손해보험사에서 별도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참여기관의 선정등) ①기관의 선정은 공제사업 개발 참여, 재무건전성, 신용평가등급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2013. 12. 31 신설).

②참여기관의 지분은 사업 안정성, 재무 건전성, 신용등급 평가, 민원서비스 수준 등을 고려하여 차등적용 할 수 있으며, 안정적 사업 운영에 장애가 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해당기관에 대하여 참여 제한 등을 할 수 있다(2013. 12. 31 신설).

부 칙(2002. 12. 9 규칙 제105호 제정)

1. (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6. 29 규칙 제119호 개정)

1. (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10. 15 규칙 제120호 개정)

1. (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12. 27 규칙 제121호 개정)

1. (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12. 30 규칙 제130호 개정)

1. (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12. 30 규칙 제141호 개정)

1. (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12. 27 규칙 제156호 개정)

1.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9. 19 규칙 제162호 개정)

1.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1. 1 규칙 제165호 개정)

1. (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12. 30 규칙 제169호 개정)

1. (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12. 28 규칙 제182호 개정)

1. (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12. 16 규칙 제196호 개정)

1. (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12. 31 규칙 제216호 개정)

1. (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12. 31 규칙 제238호 개정)

1. (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12. 30 규칙 제252호 개정)

1. (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3. 20 규칙 제258호 개정)

1. (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12. 29 규칙 제267호 개정)

1. (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